

국내 보건복지 동향

보건복지부 2017년 1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장기요양기관 진입·퇴출 기준 강화된다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2017. 1. 10.)
- 설치·폐업 반복, 서비스 질 떨어지는 기관, 지정 안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.

○ 앞으로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·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, 행정처분의 내용,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○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상 동안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.

□ ‘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’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장기요양기관의 진입·퇴출 기준 강화

□ (지정제 실효성 강화)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·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*, 행정처분 내용**, 기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* 행정 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·폐업과 같은 반복 이력 등을 확인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을 고려함.

** 급여 비용 부담 청구, 수급자 폭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성을 고려함.

○ 그동안 신청 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의 ‘지정제’가 사실상 ‘신고제’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

○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
□ (지정 취소 기준 정비)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,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, 평가 거부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
○ 종전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부당 청구 등에 한정되어 운영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어서 이들 기관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문제가 있었다.

*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: 2851개(전체의 약 16%)

2.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

□ (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)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한다.

○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은 ①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② 재가보호 우선 원칙 ③ 의료서비스 연계이며

○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에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가 자기결정권과 존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3.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

- (권리구제 절차 정비)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,

현 재		개 정
이의 신청(심사위원회)	▶	심사 청구(심사위원회)
심사 청구(심판위원회)		재심사 청구(재심사위원회)

- 재심사 청구는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.

- (부정 수급자 재판정 절차)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.

-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와 김혜선 과장은 “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 왔다면, 앞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”고 전하면서

- “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- 한편,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
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3308, 요양보험제도와, 2017. 1. 9.

II

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

- 국토부(주거급여)·교육부(교육급여) 등 관계 부처·연구진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-

-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‘기초생활보장 3개년(2018~2020년) 계획 수립을 위한 TF’를 구성해 1월 16일(월) 1차 회의를 개최했다.

-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,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.

□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됐다.

-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'기준 중위소득'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했으며,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했다.
-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2016년 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 명으로 개편 전(132만 명) 대비 34만 명(25.8%) 증가했으며,
 - 현금급여도 2016년 12월 기준 51만 원으로 개편 전 40만 7000원 대비 25.3% 증가했다.

□ 이번 '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'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개정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별 평가를 진행 중이다.
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·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.

-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·국토부·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, 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
-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 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급여별·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.

-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2017년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
붙임 1
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

1 대상자 선정 기준 다층화

- (단일 → 급여별 기준)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도입하고, 주거·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함.

* 생계급여(~중위 30%), 의료급여(중위 40%), 주거급여(중위 43%), 교육급여(중위 50%)

- (부양의무자 기준 완화)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함.

* '부양 능력 있음(수급자 제외)'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소득(4인 가구 기준): (2015. 6.) 297만 원 이상 → (2015. 7.~12.) 485만 원 이상 → (2016) 504만 원 이상 → (2017) 513만 원 이상

-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,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.

2 급여 수준 현실화

- (보장 강화)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, 지역, 가구원 수 등을 반영해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함.

개편 전			개편 후(2017년)		
선정 기준	급여 수준		선정 기준	최저보장수준	부처
최저 생계비 100%	최저생계비의 80% 수준 현금급여	생계*	중위소득 30%	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원	복지부
	의료서비스 지원	주거	중위소득 43%	기준임대료(임차) 수선유지비(자가)	국토부
	수업료, 교과서대 등 지원	의료	중위소득 40%	현행과 동일	복지부
		교육	중위소득 50%	현행과 동일	교육부

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3321, 2017. 1. 16. 기초생활보장과.

Ⅲ

환자 중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도입한다!

- 환자 경험, 의료 취약 분야 평가 확대 등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

-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24일(화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를 통해 ‘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’을 공개했다.
-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,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,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(붙임1 참고),
 - 2001년 약제 평가(항생제처방률, 주사제처방률 등)를 시작으로 급성기질환(급성심근경색증, 암 등)에서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병 등)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.
-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 경험과 의료 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‘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’를 목표로 추진한다.
 - 환자 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, 투약 및 치료 과정 등 입원 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,
 -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.
 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우리나라가 발생률·유병률·사망률 1위인 ‘결핵’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적절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 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.
 - 그 외에 그간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마취, 치과, 소아 영역의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중소 병원, 정신건강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.
-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 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.
 -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‘E-평가자료제출시스템’을 확산해 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.
-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,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 기관을 확대하며,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환자 경험 등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 계획과 평가 항목별 추진 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공지 사항 또는 E-평가자료제출시스템(aq.hir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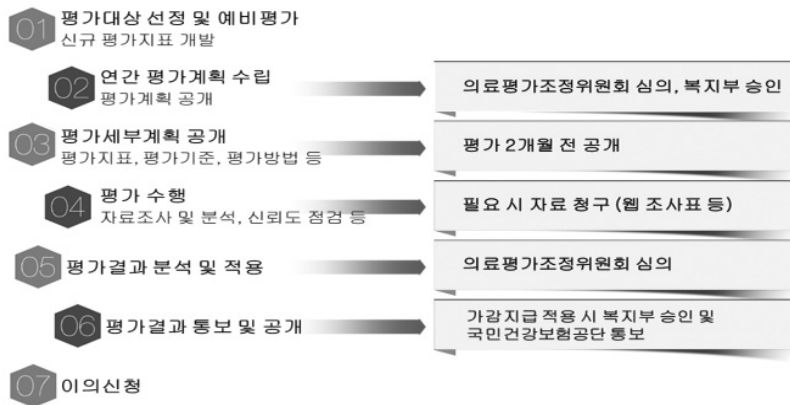
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

○ (적정성 평가)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·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함.

- (평가 대상) 암·심장질환 등 32개 항목 대상(2017년).

- (평가 내용·방법) 진료비 청구 명세서, 의료기관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행위의 평가 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함.

〈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설치〉



* 평가자료 : 전산 청구자료 (전국민 진료내역자료), 웹 시스템 이용 조사자료 (의료기관자료, 행정자치부 사망자료 등)

- (결과 활용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 지급함.

○ (가감 지급) 급성기뇌졸중,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 상·하위 또는 개선 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~5%를 가·감산함.

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3338. 2017. 1. 23.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&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부.

IV

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폭 확대

-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,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

【 전세임대주택(전세자금 지원)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(예시) 】

◇ (사례 1)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A씨(만 23세)는 현재 취업 준비 중으로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내고 원룸에서 거주 중.

- (현행)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 연령 초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 불가.
- (개선)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 가능.

◇ (사례 2)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B씨(만 22.5세)는 대학 진학 이후 질병 발생으로 휴학했으나 현재 복학해 재학 중.

- (현행) 신청 가능 연령인 만 23세 도달이 임박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 퇴소가 곤란해 신청 포기.
* 시설 퇴소 시 학업 지속, 전세금 이자 납부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병행 필요.
- (개선)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맞춰 지원 신청 가능.

◇ (사례 3) 가정위탁보호아동 C씨(만 18세)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친척집에서 독립해 취업할 예정.

- (현행) 보호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위탁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.
- (개선)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, 신청 가능.

□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.

○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 중이었으나

- 대학 재학·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 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,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○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(전세 자금 최대 8000만 원 대출)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,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.

○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 개선 내용

개선 사항	현행	개선
지원 대상 확대	- 만 23세 이하 시설 퇴소자	-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(나이에 관계없음)
	- 만 18세 미만 위탁가정	- 보호 종결 이후 5년 이내
절차 간소화(안)	- 시설장 추천, 지자체 확인	- 지자체 확인

□ 한편 ‘다가구주택 매입 임대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(평균 소득 70% 이하) 등이었고,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됐었다.

□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.

○ 자립지원시설의 가용 공간을 활용해 1실의 정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*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 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* (현행) 1실 2인 → (개선) 1실 1인(부득이한 경우 제외)

□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「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」이 이미 개정·시행 중(2016. 12. 30.)이며 추가 개선 내용은 2017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.

○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,

※ (주거 지원 안내)

-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-2127-5912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및 마이홈 콜센터(1600-1004)

○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, 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.

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3351. 2017. 1. 25.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&국도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.

V

보육료·양육수당·유아학비 신청, 이젠 내 손 안에서

- 2월 1일부터 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 「복지로」 모바일 서비스 실시
- 2017년 말 초·중·고 교육비 등 6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확대

□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보육료,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(스마트폰)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.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(PC)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.

○ 그동안 보육료·양육수당·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,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의 호응도가 높았던 점(2016년 기준 방문 신청의 약 28% 차지)을 감안해

○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,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.

○ 다만,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.

□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“복지로앱(애플리케이션)”을 내려받아 설치, 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.

○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(1단계)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 사항 확인 → (2단계) 자녀 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→ (3단계) 가족 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 정보 입력 → (4단계) 보육료 자격 조회 동의 처리 → (5단계)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→ (6단계) 신청서 제출 및 신청 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.

○ 다만, 보육료 신청을 “어린이집(0~2세) 종일”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자격 조회에서 가구 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 정보를 작성하고 필요시 가족 정보 제공 동의*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.

* 임금근로자(4대보험 가입자)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동의 필요.

○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*를 제공했다.

* UI(user interface):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.

□ 기존 ‘온라인 신청 홈페이지’ 외에 ‘복지로앱’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신청인 입장에서는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,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돼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.

○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할 때 개설된 ‘복지로앱’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(online.bokjiro.go.kr)’에 접속해 ‘복지로앱’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면 된다.

○ 아울러 기존 보육 관련 ‘각 서비스별 홈페이지*’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해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.

*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e-유치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
□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·중·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 ■

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3355. 2017. 1. 31.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·보육사업기획과&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.